경기도 GYEONGGI-DO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 - 39호

2024년도 경기도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경기도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계 급	직 군	직 렬	직 류	임용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명)
9급	행 정	행 정	일반행정	경기도	2

※ '임용예정기관 경기도'는 본 시험에 합격 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습근무 및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하며 도내 기초자치단체인 31개 시·군에서 수습근무 및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수습직원의 임용여부 심사가 이루어지며 이 결과에 따라 9급 일반직공무원 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시험과목

계 급	직 군	직 렬	직 류	시험과목
9급	행 정	행 정	일반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 시험시간은 과목별 20분(1문항 1분 기준)입니다.

계 급	직 군	직 렬	직 류	시험과목	시험시간
9급	행 정	행 정	일반행정	3과목	60분(과목별 20분)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 실시 예정이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성적 등) 심사]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라. 합격자 결정방법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s://www.moleg.go.kr) 참고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법률 제19108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호의3 및 제61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생략)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바. 삭제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나. 응시연령 : 17세 이상 (2007.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교(장)의 추천

(1) 추천 가능 학교

○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선발공고된 분야[선발예정직렬(직류)]와 관련된 학과(전문교과 과정)가 설치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기술)학교*

○ 단, 추천대상자가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타 시·도에 소재한 고등(기술)학교도 가능

* 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 및 이에 준하는 (학과)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종합고)

** 거주지 제한 요건 : 아래 표의 1번 또는 2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2023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공통유의사항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행정구역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잔여 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2)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자)** 졸업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까지의 기간이 역산하여 1년 이내인 자에 한함

※ 예시 :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2024.12.15.인 경우, 2023.12.15.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 **(졸업예정자)**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사과정 이수자 또는 조기졸업예정자

(단, 수습근무 시작 전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의 효력 상실)

(3)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전문교과 이수

○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전문교과를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의 50% 이상 이수하여야 함 ※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기준

계 급	직 군	직 렬	직 류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전문교과
9급	행 정	행 정	일반행정	경영·금융 교과(군)

○ 관련 전문교과 해당여부는 교육부 고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17개 교과(군) 분류에 따름(붙임4 참조)

※ 단,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개설한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과목과 전문교과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은 추천대상자 개인별 **NEIS 성적증명서상의 교과(군) 편제에 따름**

(4) 성적

○ 이수한 모든 과목에 대하여, **①전문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평균 B이상**이고 **②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③보통교과 평균석차등급이 3.5이내**이어야 함 ※ 단, 보통교과 경우 석차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 제외

⇒ ① + ② + 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대상과목

(졸업자) 전(全) 학년에서 이수한 과목

(졸업예정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 산출방법

《전문교과 : 성취도 평균 B 이상 산출방법》

성취도 평균 B 이상 산출값 = Σ(전문교과 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총 이수과목수 ≥ 0 성취도 환산점수 : A=1점, B=0점, C=-1점, D=-2점, E=-3점

《전문교과 : 성취도 A 비율 산출방법》

성취도 A 비율(%) = (성취도 A 이수과목수÷총 이수과목수)×100

《보통교과 : 평균석차등급 산출방법》

평균석차등급 = [Σ(과목별 단위수×과목별 등급)]÷Σ과목별 단위수

※ 석차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제외

라. 추천 시 유의사항

(1) 추천 가능 인원

○ 추천대상자(동일인)는 1개의 학교에서 1개의 직류(분야)에만 추천될 수 있습니다.

○ 학교의 장은 학과별로 2024년 최종학년 해당학과 정원(추천시점 기준)이 100명 이하일 경우 2명까지, 101명 이상일 경우 3명까지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학과별 추천인원을 모두 합하여 1개 학교당 총 인원은 5명까지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추천대상자 선발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 학교에서는 자체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다수의 졸업(예정)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학교의 장은 동일 연도에 동일인을 다수의 기관에 추천하는 사례를 지양해야 합니다.

○ 학교에서는 추천기준, 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의 심의 및 추천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추천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설치된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추천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

< 추천심사위원회 운영 시 유의사항 >

- 자의적 해석이나 개인 선호에 따라 추천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 추천심사위원회는 추천기준 및 추천절차 마련, 추천대상자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객관적·명시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추천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정확한 비교집단 범위의 확정 및 성적 산출을 하여야 하며, 가급적 졸업예정자 위주로 추천할 것을 권장합니다.
- 회의 구성내역과 추천기준,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 추천대상자의 수가 추천 가능 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천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한 후 추천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있을 경우, 우선 추천합니다.

○ 학교에서는 회의 의결로 자체적으로 추천대상자를 선정하는 독자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객관적·명시적이어야 하며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추천절차 등 추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자체의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추천대상자의 성적증명서 등 제출된 관계서류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 및 공직임용 취소와 함께 당해 학교는 향후 3년 동안 추천할 수 있는 학교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제출제

인사혁신처에 위탁 출제하는 이번 필기시험의 전 과목(국어·영어·한국사)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6 시험일정

학교장 추천서 제출기간	응시원서 접수기간 ※ 기간 중 상시 접수가능	취소기간 [추가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7. 22.(월) ~ 7. 25.(목)	7. 30.(화) 09:00 ~ 8. 2.(금) 18:00	7. 30.(화) 09:00 ~ 8. 5.(월) 18:00	필기시험	8. 16.(금)	8. 31.(토)	9. 11.(수)
		[8. 12.(월) 09:00 ~ 8. 14.(수) 18:00]	면접시험	9. 11.(수)	9. 25.(수) ~ 9. 28.(토)	10. 14.(월)

※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하지 못할 경우, 별도로 지정된 추가 취소기간을 활용하여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에 공고하며, 문자 등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확인기간 별도 안내)

7 학교장 추천서 등 제출

가. 제출기간 및 방법

(1) 제출기간 : 2024. 7. 22.(월) ~ 7. 25.(목)

(2) 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 수신처 : 경기도 - 자치행정국 - 인사과)

○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 7. 25.(목)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주소 : (우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인사과 인재채용팀(이의동)

나. 제출서류 : '2024년도 경기도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현황표' (붙임1 서식 참조)

다. 유의사항

○ **제출기간 내에 접수된 추천대상자에 한하여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천현황표에 추천대상자 전원을 기재한 후 단일 파일(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대상자별로 기재한 다수의 파일(문서) 형태 제출 금지

○ 추천현황표 이외에 **학교장 추천서·전문교과 이수확인서·성적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등** 응시자격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및 확인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제출하여야 할 증빙자료의 종류·제출방법·제출기간 등을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객센터(☎1522-0660)로 문의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상시 접수가능(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 마감시간(마감일 18:00)에 임박하여 접수하는 경우, 시스템오류 등의 문제로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 타 : 응시수수료(5,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전화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수수료 등)이 발생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나. 응시수수료 환급 : 다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가 일부 또는 전액 환급됩니다.

(1) 일부환급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과오납한 금액 환급)

(2) 전액환급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원서 접수기간이나 취소기간(추가 취소기간 포함)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한 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9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가. 가산 대상 자격(면허)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경우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면허)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계 급	직 군	직 렬(류)	가산 대상 자격(면허)증 종류	가산비율
9급	행 정	행정(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5%

나.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1) 필기시험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 자격증 정보 등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2) 가산점 등록기간 및 시간

등록기간 (기간 중 상시 등록 가능)	비 고
2024. 8. 31.(토) 09:00 ~ 9. 2.(월) 18:00	마감일(9.2.)의 경우,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함

(3) 가산점 등록대상 및 입력사항

등록대상	등록사항
가산 대상 자격(면허)증 소지자	자격(면허)증 종류, 자격(면허)번호

※ 관련 정보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수습근무 및 임용

가. 최종합격자는 2025년 상반기(예정) 중 수습근무(기본교육 포함)를 시작합니다.

나. 수습근무기간 중 담당할 구체적인 업무과 수행할 과제는 합격자별로 향후 각 기관(부서)에 배치된 이후 부여받게 됩니다.

다. 수습근무 중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수습근무 종료 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수습기간을 호봉에 반영합니다.

라. 수습직원이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수습직원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하(“불량”) 등급을 받은 자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수습의 유예 및 정지기간의 만료 후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더 이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수습근무를 유지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수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수습직원의 임용여부 심사가 이루어지며 이 결과에 따라 9급 일반직공무원 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격 및 거주지제한 사항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은 **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을 의미**합니다.

나.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경력,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65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여 당해 시험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라.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득점) 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 실시 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번 시험의 문제는 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필기시험 장소는 응시인원 규모 및 시험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시자별 시험장 배정이 이루어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필기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면접등록**을 하여야 하며, 면접등록을 하지 않거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서류제출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 필기시험 성적조회는 실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한하여 지정된 열람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필기시험 성적조회 열람기간 공고

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번 시험에 합격하여 향후 최종 임용된 사람은 **4년 이내에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될 수 없습니다.**

차.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해당 및 공무원신체검사 결과 부적합 등의 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카. **이번 시험의 합격자가 향후 정규 공무원으로 최종 임용될 경우, 합격(임용결정)의 유효기간은 2년(단,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은 미포함)이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타. 자원봉사실적은 해당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며, 대상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제출기간에 봉사실적 인증서·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헌혈도 자원봉사실적으로 제출 가능(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기간 동안 헌혈자 본인에 한해서만 유효하며 헌혈 1회당 4시간 / 연간 최대 20시간 인정)

※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 1365 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 등에서 출력한 인증서 유효, 봉사일자·장소·내용·시간이 명기되고 해당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도 유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무보수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인정불가 사례 : 물품 및 현금 기부·후원, 종교 활동, 졸업 및 성적요건 충족을 위해 수행한 봉사 등)

파. 최종합격자가 수습근무를 포기하거나 수습근무 시작 전일까지 해당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때에는 수습근무 시작 전까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031-8008-40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